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52호 2016. 02. 2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29호 2016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3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7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6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7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 1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289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재공람 공고 ----- 25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 - 2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6. 0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신석로112번길 2-1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8-4	신석로112번길 2-1	2016.02.16.	건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25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744번길 55-64외 10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2. 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6-02-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56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길 55-64 (불로동)	2008-12-31	검단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4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22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29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3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78-23	인천광역시 서구 담지로104번길 31 (연희동)	2010-11-11	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	
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76-13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로 76-11 (원창동)	2009-09-22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03-11, 103-4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 89-5 (왕길동)	2009-09-22	사월이라 불리던 자연부락의 옛 지명을 이용하여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08-4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12번길 2-1 (석남동, DH씨밀레주상복합타운)	2009-09-22	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73-5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2로 26 (오류동)	2012-10-25	우리구 해넘이 명소 정서진 명칭을 반영한 정서진로에서 분기되는 두번째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807-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41번길 14 (연희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4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4-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49번길 3-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4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841-7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울로67번길 3-1 (경서동)	2012-03-30	청라한울로의 시작점에서 6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지구 B1블럭 3,4로트	인천광역시 서구 청중로 486 (가정동)	2010-11-11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로 청라중앙로를 줄인 말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6 - 29호

2016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기준 재정공시

- ◆ 우리 서구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5,486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44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4,380억원)보다 1,106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1,840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987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4억원입니다.
- ◆ 우리 서구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40.64(36.58)%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45.51(41.45)%입니다.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우리 서구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29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서구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이나 각종 사업의 추진으로 예산규모가 커지며, 재정자주도는 감소하는 상태이므로 지속적인 세원 발굴 및 늘어나는 세출에 대비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seo/icsg4/sub04/001/sub01_02/)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예산실 예산팀(☎560-4053)으로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주민의견수렴 게시판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2016. 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 - 3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02. 2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 가. 허가 번호 : 제2016 - 03호
 - 나. 허가연월일 : 2016. 02. 26.
2. 점용·사용의 목적 : 주차장
3. 점용·사용의 장소 : 인천 서구 심곡동 222-13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66m²
 - 나. 기 간 : 2016. 04. 01. ~ 2018. 03. 31. (2년)
5.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가. 성 명 : 이**
 - 나. 주 소 : 인천 부평구 안남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 - 32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27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5-113호(2015.08.0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27호선, 사업명:염곡로(중로 1-2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6. 2.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120-1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1-27호선)
 - 명칭 : 염곡로(중로 1-2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B=20~25m, L=215m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결정	중로	1	27	20~25	보조 간선	4,565	광로 29	대로 229	일반 도로	1966. 11	
금회 시행	중로	1	27	20~25	보조 간선	215	광로 29	대로 229	일반 도로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붙임과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3번 참조(상세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

■ 용 지 조 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계		53필지		86,375.3	9,530.0						
1	가정동	204-150	전	95	32	인천광역시서구					
2	가정동	204-142	전	227	5	인천광역시					
3	가정동	204-148	답	15	15	인천광역시서구					
4	가정동	204-138	전	73	51	인천광역시서구					
5	가정동	204-129	답	173	173	인천광역시서구					
6	가정동	204-114	도	58	58	인천광역시서구					
7	가정동	120-156	도	16,998	377	인천광역시					
8	가정동	120-39	도	59	59	인천광역시					
9	가정동	204-15	전	981	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0	가정동	204-139	답	434	15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1	가정동	204-130	답	56	56	인천광역시서구					
12	가정동	204-115	도	4	4	인천광역시서구					
13	가정동	204-91	답	52	52	인천광역시서구					
14	가정동	204-156	도	866	866	인천광역시서구					
15	가정동	204-5	도	463	44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천지역본부)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6	가정동	204-9	답	78	78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7	가정동	204-6	답	1,718	9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8	가정동	204-126	답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19	가정동	204-124	답	146	146	인천광역시서구					
20	가정동	204-153	답	3	3	인천광역시서구					
21	가정동	204-74	답	696	59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2	가정동	204-131	답	285	284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3	가정동	204-127	답	18	13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4	가정동	204-112	답	1	1	인천광역시서구					
25	가정동	204-125	답	61	37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6	가정동	204-154	답	38	38	인천광역시서구					
27	가정동	204-110	답	4	4	인천광역시서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8	가정동	204-128	답	211	65	한국토지주택공사 외 1인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29	가정동	204-157	도	261	118	인천광역시서구					
30	가정동	204-160	도	549	440	인천광역시서구					
31	가정동	204-88	도	503	42	인천광역시					
32	가정동	572-1	도	34.7	15	인천광역시					
33	가정동	572	도	2,292.6	2135	인천광역시					
34	가정동	472	대	206.3	2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5	가정동	472-29	대	42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6	가정동	472-13	대	120.6	12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7	가정동	472-12	대	631.1	589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8	가정동	472-11	대	263.5	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39	가정동	472-33	대	133.1	1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0	가정동	571	도	39,613.5	759	인천광역시					
41	가정동	204-111	도	183	183	인천광역시서구					
42	가정동	476	주	621.8	32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3	가정동	476-8	대	575.1	312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4	가정동	204-86	답	47	47	인천광역시서구					
45	가정동	476-9	대	165.3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6	가정동	476-7	대	326.4	16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7	가정동	476-18	대	165.4	165.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8	가정동	476-23	대	165.4	16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49	가정동	476-2	대	202.7	16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0	가정동	476-34	대	202.6	13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1	가정동	476-5	대	288.6	83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2	가정동	476-4	대	376.6	21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53	가정동	574-1	도	14,104	3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75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우리구 연희동 일원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9조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2. 2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청
3. 지적공부 확정내역

소재지	종전토지 지적공부			확정토지 지적공부		
	필지수	면적(m ²)	비고	필지수	면적(m ²)	비고
연희동	131	571,170m ²	지번 조서 참 조	9	623,856.4m ²	지번 조서 참 조
심곡동	61	45,940m ²				
가정동	5	5,985m ²				

4. 시행일 : 2016. 2. 24.
5. 공고기간 : 2016. 2. 25. ~ 2016. 3. 10. (14일간)
6. 열람장소 :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
7.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 토지정보과 032-560-48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8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2. 2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1.12.13.)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식 정비
 - 용어의 정의(대인→어른, 소인→어린이) 변경에 따른 반영
 - 사용료 변경에 따른 단체사용권 별지 서식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전화번호 : 032-560-4167 (FAX 560-2720)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2011.12.13.)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서식 정비
 - 용어의 정의(대인→어른, 소인→어린이) 변경에 따른 반영
 - 사용료 변경에 따른 단체사용권 별지 서식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로 한다.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조례 제5조 제2호와 제3호 규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및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으로, “제7호 규정에 의거”를 “제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 “제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을 “따른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정리 하여야”를 “정리하여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 다음날 까지”을 “따라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12시까지에”를 “12시까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익년”을 “다음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등”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으로, “사용시간외”를 “사용시간 외”로 한다.

제9조 중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15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는 등록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5조(사용권 관리) ① (생략)

②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권 판매실적 보고) 관리관은 당일 사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날 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권 판매수입금) 관리관은 사용권 판매수입금을 다음날 12시까지에 세입결의하여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구금

-----.

③ -----

----- 따른 -----

----- 따른 참전유공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권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따라 -----
----- 정리하여야 -----
-----.

제6조(사용권 판매실적 보고) ---

----- 따라 다음 날까지-----
-----.

제7조(사용권 판매수입금) -----

-- 12시까지 -----
-----.

고 휴무일에는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썰매장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등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 사용시간외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험가입)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를 받은 자는 임대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한 손해보험과 이용자의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영업배상보험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임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제8조(사용시간) ①----- 제9조에 따라 -----

다음해 -----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야간개장 등 -----
----- 사용시간 외 -----
-----.

제9조(보험가입) ----- 제15조제1항에 따라 -----

-----.

제10조(지도·감독) ----- 제15조제3항에 따라 -----

-----.

(별지 제1호서식)

사용권 (3종 : 어른, 청소년, 어린이)

<전면>

편 철 부 분	No. 000000 -----	No. 000000 -----	No. 000000 -----
	썰매장사용권(원부)	회 수 권	영 수 증
	어른:₩ 원	어른:₩ 원	어른:₩ 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후면>

<p><이용자 주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약자, 임신부, 음주자는 이 용할 수 없습니다. 2. 2인이상 탑승을 금합니다 3. 굽 높은 구두를 신고 썰매를 탈 수 없습니다. 4. 모든 이용자는 안전수칙과 안 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 한 안전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편 철 부 분
---	--	--	--

1. 용지규격은 32절 이하로 한다.
2. 100매를 1권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단 체 사 용 권

<전면>

편 철 부 분	No.000000 썰매장 단체사용권(원부)			

	구 분	썰 매 장 사 용 료	인 원	합 계
	어 른	5,000원×(100-[감면율])%		
	청 소 년	3,000원×(100-[감면율])%		
	어 린 이	3,000원×(100-[감면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편 철 부 분	No.000000 썰매장 단체사용권(회수권)			

	구 분	썰 매 장 사 용 료	인 원	합 계
	어 른	5,000원×(100-[감면율])%		
	청 소 년	3,000원×(100-[감면율])%		
	어 린 이	3,000원×(100-[감면율])%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1999.12.30.>

펼매장 사용권 수불부

일자	분 류	구 분(매)					확 인 란	
		인쇄량	불출량	사용량	반납량	잔고량	인수자	과 장
	5 천 원 권							
	3 천 원 권							
	7 천 원 권 (삭제)							
	단 체 권							
	5 천 원 권							
	3 천 원 권							
	7 천 원 권 (삭제)							
	단 체 권							

(별지 제4호 서식)

썰매장 사용권 판매실적 보고									
사용권 판매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종 별	전일까지 누계		당 일		누 계		당 일 수입금	남 일 일 시	수 입 누 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 []	() []	() []	() []	() []	() []			
3 천 원 권	() []	() []	() []	() []	() []	() []			
5 천 원 권	() []	() []	() []	() []	() []	() []			
7 천 원 권 (삭제)	() []	() []	() []	() []	() []	() []			
단 체 권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썰매장등 관리관 (인) </div> <div style="text-align: left; margin-left: 50px;"> 서 구 청 장 귀하 </div>									

(주) ()속에는 50% 감면자, []속에는 면제자 기재

관계 법령 발췌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4. “어린이“라 함은 5세 이상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6. “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 (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요금임) (개정 2007.6.19.)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별표2)				
[별표 2] (개정 2010.8.5, 2011.12.13)				
사 용 료				
시설명	기 준	요 금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할인요 금	비 고
사계절썰매장 (야외풀장포함)	어 른	5,000원	2,500원	1회 입장 기 준
	· 청소년	3,000원	1,500원	
	어린이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289호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한 재공람 공고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1414호(2015.10.19.), 제1457호(2015.10.22.)로 공람 공고하였으나,

주민의견 청취,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개발계획(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재공람 공고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개요

- 가. 구역명칭: 루원시티 도시개발구역(변경 없음)
-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71번지 일원(변경 없음)
- 다. 면 적

구 분	면 적 (㎡)		
	기 정	증 감	변 경
루 원 시 티 도시개발구역	971,892.2	감) 37,976.2	933,916

라. 시행기간: 2006. 8. 28. ~ 2018. 12. 31.(변경 없음)

마. 주요내용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971,892.2	감) 37,976.2	933,916
주 거 용 지	197,394	감) 103,008	94,386
상업·업무시설용지	242,706	증) 145,972	388,678
도시기반시설용지	520,987.2	감) 72,370.2	448,617
기 타 시 설 용 지	10,805	감) 8,570	2,235

○ 인구수용계획

구 분	면 적(m ²)		세대수(세대)		수용인구(인)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290,850	297,125	11,291	9,666	29,808	24,361
주 거 용 지	194,892	73,462	6,971	2,037	18,403	5,133
상 업 용 지 (주상복합)	95,958	223,663	4,320	7,629	11,405	19,228

○ 기타사항: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가. 시 행 자: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사 업 시 행 자		주 소
기 정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
변 경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나. 시행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변경 없음)

3.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 440-4510)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실(☎ 560-590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1동 주민센터(☎ 560-460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동 주민센터(☎ 560-4604)

다.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4. 기타

○ 「도시개발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내용(도면포함)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고 공람장소에 비치합니다.